

# K SOX Newsletter

# 목차

- Section I. Law & Regulation ..... 2**
  - 1. 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2023.5.15, 금융감독원) ..... 2
  - 2. 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4.24, 금융위원회) ..... 4
- Section II. Articles ..... 6**
  - 1. 삼성 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3 차 개정판 (사전 신청 안내) ..... 6
  - 2.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에 대한 투자 수준과 기말감사의 효율성」 7
  - 3. 삼성 KPMG,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현황 ..... 8
- Section III. Q&A ..... 9**
  -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시 해외 종속회사의 업무 범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3.5.2) ..... 9
- Section IV. News & Events. .... 10**
  - 1. [삼성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제 9 회 ACI 세미나 -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 10

## Section I. Law & Regulation

※ 제목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1. 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2023.5.15,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에서 현 자율규정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필수적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기로 논의

### (1) 배경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제6조제4항<sup>1</sup>, 2023년 5월 2일 시행)으로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이하 ‘평가·보고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됨
- 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상장회사협의회)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기업 경영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동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 〈현 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체계〉

구분	설계 및 운영 관련	평가 및 보고 관련
원칙적 적용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자율적 지침	설계·운영 적용기법(일반,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사례	평가·보고 적용기법(일반, 중소기업)

↓  
규정화 대상

### (2)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방대한 현 자율규정<sup>2</sup>의 필수적 사항 선별 및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1명), 유관기관(2명), 학계(2명), 회계업계(3

<sup>1</sup>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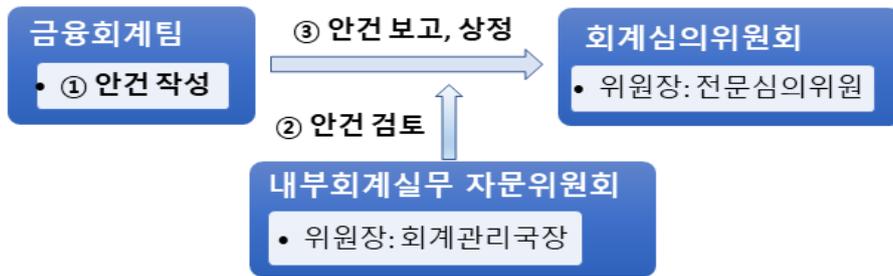
<sup>2</sup>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111문단, ② 적용기법(대기업) 165문단, ③ 적용기법(중소기업) 165문단

명), 기업측(3명) 등 11명으로 구성

- ① 평가·보고지침 제·개정시 자문, ② 실무 적용이슈 자문, ③ 동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

- 평가·보고지침은 자문위 검토 및 회계심의위원회<sup>3</sup>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개정할 계획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제·개정 절차〉



(3) 자문위 첫 회의 결과

- 5월 12일(금) 자문위 첫 회의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정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 그간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상장협)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
  - 단, 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지침에 반영하고,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예정

(4) 향후 일정

- 5월 12일(금) 자문위 첫 회의(Kick-off)에서 제정 방향 논의를 시작으로 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하도록 하겠음
  - 필수적 평가·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FAQ)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평가·보고지침을 마련 예정

〈향후 일정〉

일정	내용
5월 12일(1차 자문위)	• 자문위 운영방안 및 평가·보고지침 제정 방향 논의

<sup>3</sup> 금융감독원 정관 규정에 따라 회계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심의기구(총 7명)

6~7월(2·3차)	• 평가·보고지침 초안 마련 및 자문위 논의
8월(4차 자문위)	• 평가·보고지침(안) 마련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9월	• 외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 세부 일정은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Back to Top

2. 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4.24,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5월 2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
✓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상향(자산1천억원→5천억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독 내실화
✓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던 2개의 하위규정<sup>4</sup>도 같은 날 고시하여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sup>4</sup>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 천억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 천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혼선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둘째,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셋째,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sup>5</sup>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

<sup>5</sup> ①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②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③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또한,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 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하였다.

※ 포상금 산정액 = 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 × 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5 월 2 일부터 관보에 게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2 개 하위규정도 같은 날 고시된 후 바로 시행된다.

▲ Back to Top

## Section II. Articles

※ 제목 및 이미지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 1. 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 (사전 신청 안내)



Click하여 사전 신청 안내 다운로드

<b>I 장 기업거버넌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기업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기업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제시</li> </ul>
<b>II 장 감사위원회 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기준</li> <li>• 감사위원 선임 절차</li> <li>• 감사위원회의 역할, 권한, 책임</li> <li>• 감사위원의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li> </ul>
<b>III 장 감사위원회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규정</li> <li>• 연간 계획 수립 및 투입시간 배분</li> <li>• 회의 활동 및 회의 이외 활동</li> </ul>
<b>IV 장 감사위원회 활동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보고 감독 (<u>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포함</u>)</li> <li>•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및 평가</li> <li>• 내부감사 감독</li> <li>•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li> <li>• ESG 감독</li> <li>• 리스크 감독</li> </ul>

#### 주요 개정사항

1. 2023년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반영
2. 2021년 통합 개정된 ESG 모범규준 반영

3. ESG 공시 의무 강화 동향 소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의무화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4. IV장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재편  
종전 5가지 활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ESG 감독'을 추가하여 총 6가지 활동영역으로 재편
5.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 추가
6. 해외 기업 Audit Committee 운영 모범사례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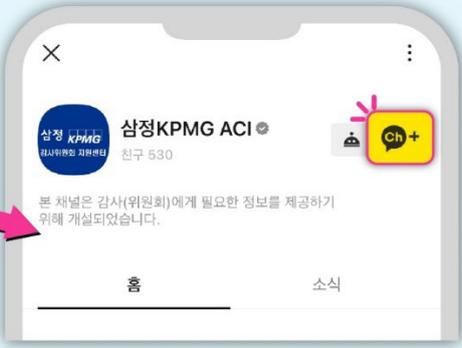


### 삼성KPMG ACI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발간물 신청 방법



**STEP 1**  
상단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주시거나 카카오톡 APP 상단의 검색창에 '삼성KPMG ACI'를 검색해주세요.

삼성KPMG ACI 🔍



**STEP 2**  
우측 상단의 채널 추가 버튼 ➕ 을 눌러 친구 추가를 완료하세요!

**STEP 3**  
대화창 하단의 6개의 탭 중 '발간물 신청'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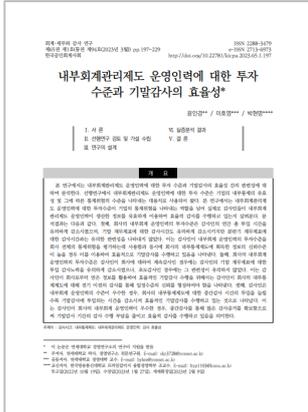


※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은 한정된 수량으로 제작되어, 선착순으로 접수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 Back to Top

2.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에 대한 투자 수준과 기말감사의

효율성



[분석 결과]

- 회사의 내부회계 운영인력의 투자수준은 감사인의 연간 총 투입 시간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시간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만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시간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감사인이 내부회계 운영인력의 투자수준을 회사 전체의 통제위험을 평가하는데 사용함과 동시에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획득한 정보의 신뢰수준이 높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기말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회사의 내부회계 운영인력의 투자수준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계속감사인 경우에는 감사인의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투입 감사노력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나, 초도감사인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감사인이 회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기말감사 수행을 위해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전기 이전의 감사를 통해 일정수준의 신뢰를 형성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 감사인은 내부회계 운영인력의 수준이 우수한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중간감사 시간의 투입을 늘릴수록 기말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기말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 운영인력이 우수한 경우, 중간감사를 통해 많은 감사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기말감사 기간의 감사 수행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Back to Top

3. 삼정KPMG,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 현황<sup>6</sup>

구분	감사 대상		구분	검토 대상	
	2021	2022		2021	2022
비적정 기업 수	3	38	비적정 기업 수	91	47
조사 대상 기업 수	485	1,508	조사 대상 기업 수	1,943	903

<sup>6</sup> 조사 대상 기업: 사업연도의 차년도 3월 말 시점 상장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주권상장법인 및 주식예탁증권(DR) 중 1~3월에 상장한 법인 제외, FY2022는 12월 결산법인만 포함 / 추후 별도 보고서 발간 예정

	(자산 5 천억원 이상)	(자산 1 천억원 이상)			
비중	0.6%	2.5%	비중	4.7%	5.2%

▲ Back to Top

### Section III. Q&A

본 섹션의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삼성KPMG는 이에 대한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등에 필요 시 반드시 유권기관의 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시 해외 종속회사의 업무 범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3.5.2)

Q.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이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범위에 해외 종속회사가 포함되어 있음
- 이 때 해외 종속회사도 당사와 마찬가지로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구조에 대한 이 사 회의 관리·승인 절차가 필수적인지 문의함

A.

- 지배회사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지배회사 범위 선정 단계에서 종속회사(또는 종속회사의 특정 부문)가 포함된 경우, 지배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해당 통제에 대해 평가 및 관련 문서 구비를 해야 함
  - 이는 종속회사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됨

**[관련 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개정(2022.2.7)**

**Q 49.** 종속회사가 이미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소재하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지배회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 국내 종속회사가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수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종속회사가 설계하고 운영하는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적절성을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배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Q 51.** 종속회사가 2021년 발표된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적용한 경우, 첨부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기술하는 내부통제체계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구분 기재하여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하나의 내부통제체계가 적용되고, 일관된 방식으로 설계·운영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과 평가의 범위에 포함된 종속 회사는 동일한 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적용기법은 신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신모범규준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에 기술하는 내부통제체계에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 Back to Top

## Section IV. News & Events.

-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제9회 ACI 세미나 -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 사례 연구

### | 행사 개요 |

- 일 시: 2023년 7월 3일(월), 13:30 ~ 17:20
- 장 소: 콘래드 호텔 서울(여의도) 3층 그랜드볼룸

### | 행사 내용 |

Time	Agenda	Speaker
13:30-13:35 [5분]	세미나 안내	
13:35-13:40 [5분]	Opening Remarks - 김교태 CEO(삼성KPMG)	
13:40-14:10 [30분]	Key Note Speech 주주행동주의와 이사회 패러다임	김우찬 교수 (고려대 경영)
14:10-14:45 [35분]	Session I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사례연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독과 핵심감사사항 논의에서의 감사위원회 역할	한상현 전무 (삼성KPMG)
14:45-15:00 [15분]	Break Time	
15:00-15:35 [35분]	Session II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사례연구 M&A 의사결정에서의 이사회 역할	김이동 부대표 (삼성KPMG)
15:35-16:10	Session III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사례연구	김진귀 전무

[35분]	ESG 경영과 이사회 활동	(삼성 KPMG)
16:10-16:25 [15분]	Break Time	
16:25-17:15 [50분]	Session IV 패널토의 및 Q&A	ACI 자문교수단
17:15-17:20 [5분]	Closing Remarks –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삼성KPMG)	
17:20~	석찬	

**| 참가 신청 |**

- 하기 'Regiter' 또는 '참가신청하기' 클릭하여 사전 등록



[▶ \[참가신청하기\]](#)

**| 안내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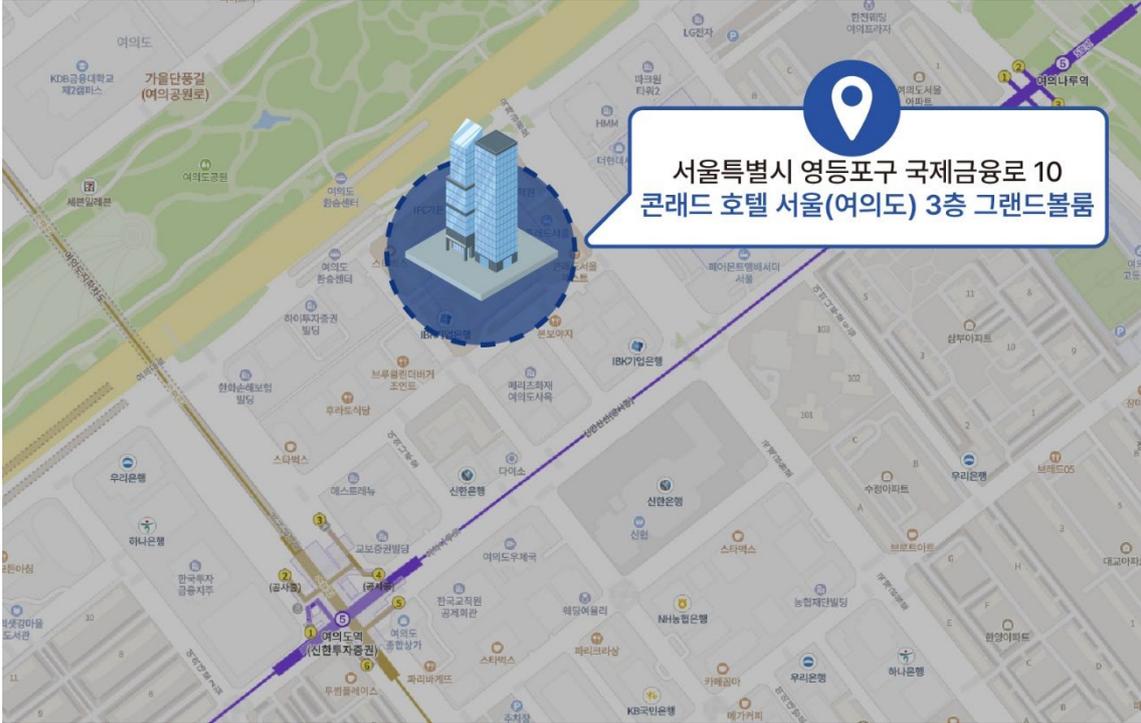
- 석찬 제공 (별도 신청 필요)
- 이수 후 수료증 발급 및 기업공시서식 기준상 CPE(4H) 인정
- 교재는 현장 배포

**| 문의 |**

- 담당부서: ACI 세미나 운영사무국
- 전화: 02-2112-0296
- 이메일: kr-fmsamjongkpmgaci@kr.kpmg.com

**| 오시는 길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콘래드 호텔 서울(여의도) 3층 그랜드볼룸



▲ Back to Top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